

#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석주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940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17년 7월 26일

발 의 자 : 이석주 의원(1명)

찬 성 자 : 남창진, 이숙자, 전철수, 우창윤,  
유동균, 이성희, 박운기, 김정태,  
김경자(강서), 박중화, 주찬식,  
김동승 의원(12명)

## 1. 제안이유

- 다양한 공공시설물을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시민의 이용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미디어폴 형태의 “지주형 가로영상문화시설”을 광고물 표시가 가능한 공공시설물로 지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의 종류에 “지주형 가로영상문화시설”을 추가함(안 제10조제1항제2호).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 
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안 제1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지상변압기함, 공공자전거보관대, 교통정보안내판, 횡단보도 쉼터,  
지주형 가로영상문화시설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       안
<p>제10조(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) ① 영 제17조제1호라목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<u>지상변압기함, 공공자전거보관대, 교통정보안내판, 횡단보도 쉼터</u></p> <p>② ~ ③ (생략)</p>	<p>제10조(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) ①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지상변압기함, 공공자전거보관대, 교통정보안내판, 횡단보도 쉼터, 지주형 가로영상문화시설</u></p> <p>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